

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337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실험연극의 산실인 (구)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이 신규 조성될 예정으로, 본 시설을 기존 남산예술센터와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
- 나. 공연장 운영 및 공연예술 창작지원 등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서울문화재단에 통합 민간위탁하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남산예술센터
- 소재지
 - 남산본관(기존) : 중구 소파로 138
 - 삼일로본관(신규) : 중구 삼일대로9길 12
- 시설규모
 - 남산본관(기존) : 대지 3,264.1㎡, 연면적 4,408.5㎡
 - 삼일로본관(신규) : 대지 352.1㎡, 연면적 417.03㎡
- 개관일자 : 2009. 6. 8.(본관)/ 2017. 3월중(분관)
- 이용대상 : 서울시민

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1년('17. 1. 1.~'17. 12. 31.)
- 수탁기관 : 서울문화재단

○ 위탁업무

- 공연장(드라마센터, (구)삼일로창고극장) 및 예술교육관, 부대시설 등 관련 모든 시설물의 관리·운영
-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 전반
-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전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문화예술진흥법 제5조(문화공간의 설치 권장)」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」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(사업의 대행)」
재단은 국가·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·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민간위탁금 편성(2,880,000천원)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유지현(☎2133-2531)